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장 / 위원회 구성
- 제2장 / 심의 · 의결 절차
- 제3장 /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이며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위원회와 제19대 총선 심의위원회가 최초로 동시에 운영됐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 기간	선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2012. 5. 11.	2012. 4. 11.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협회, 공정언론시민연대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민주당(후에 민주통합당으로 당명 변경)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단체	비 고
위원장	박기동	현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원병설	현 배재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명호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정언론시민연대	(시민단체)
	박석태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황의봉	현 세종대학교 초빙 교수	신문협회	
	김택근	전 경향닷컴 사장	민주당	
	이성섭	현 법률사무소 법현 대표변호사	한나라당	
	이준웅	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조우성	현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

체심의회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1. 자체심의

언론사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 심의원과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 기사 심의 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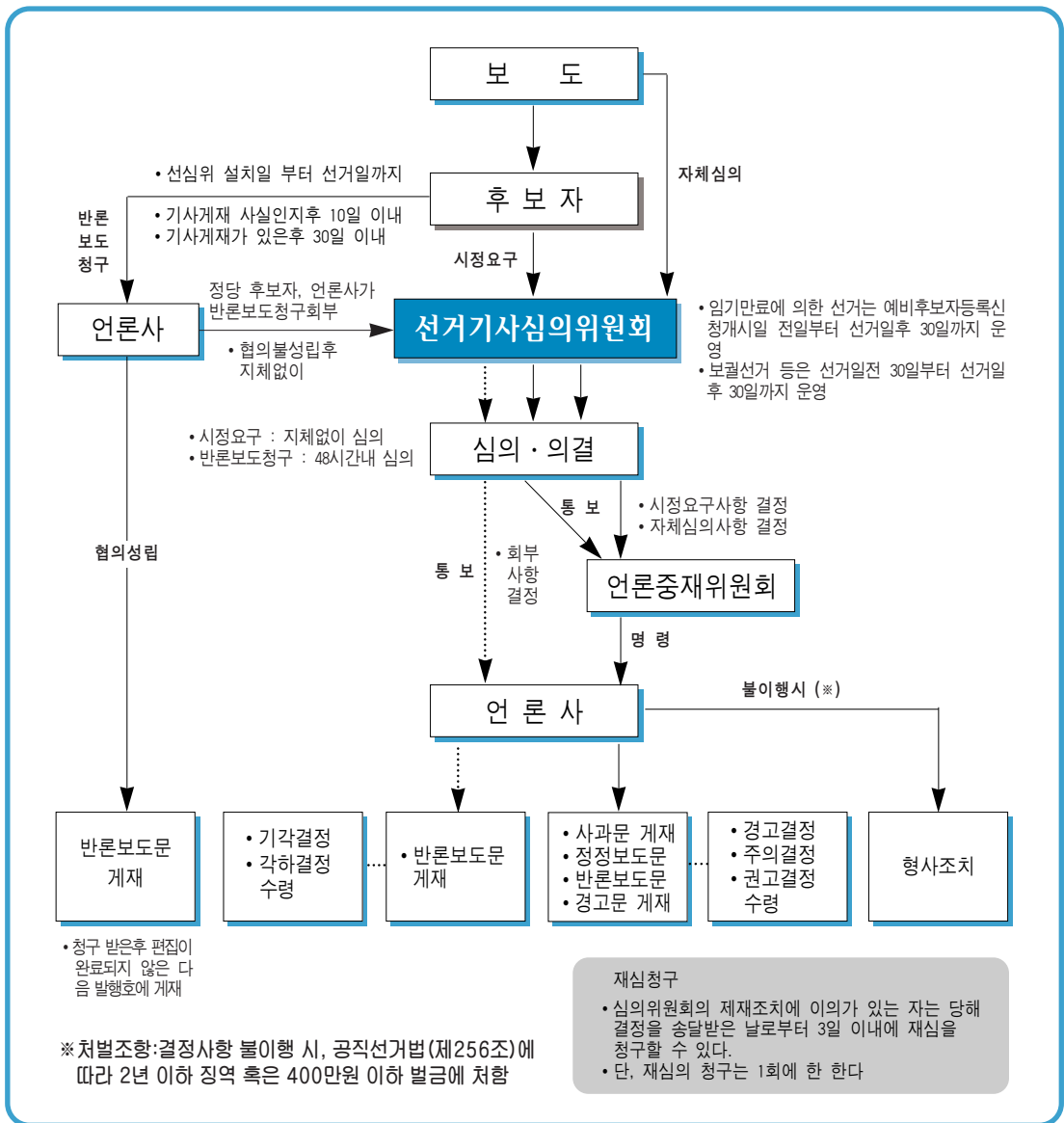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 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이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 · 의결 흐름도】



1.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2년 3월 5일)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언론중재위에서 준비함에 따라 선심위 규칙상 제재조치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선심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를 통해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보도심 의기구 제재조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7헌마290)을 존중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강도가 강한 것부터 열거하며 주의, 권고 외에 '경고'를 부활했다.

둘째, 선심위 안전에 대해 권고 등의 조치 및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했다.

셋째, 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결정문으로 송부함에 따라 별도 처리결과통보서 서식을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2년 3월 7일)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첫째, 선거기사의 범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의 범위를 일반 보도 외에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고금지규정에서 예외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셋째, 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 중 경고조치를 부활하고 사과문 게재결정의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제재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재정비했다.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